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1. 21. 고민정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 2026. 1. 2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2.24.) :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2.26.) :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3.12.) :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6.3.17.) : 상정 · 제안설명 · 축조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2026.3.23.) : 상정 · 제안설명 · 축조심사
· 의결(수정가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3.24.) :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수정가결)

3.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고민정의원)

현행법은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와 대상으로 군복무 기간,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지원청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대한민국 인구의 약 50% 이상이 거주하고 고등교육기관, 기업, 의료 및 문화시설, 교통 등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바, 수도권은 주거비 상승, 교통 혼잡, 미세먼지 등 도시환경이 악화되는 반면, 지방 중소도시는 청년층 유출로 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생을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인재의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에

국가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제6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최선영)

- 개정안은 이와 같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중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200이하인 가구의 학생’을 의무상환 개시전까지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지방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실질적인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방대학에 대한 혜택부여를 통하여 지방대학 입학유도를 위한 유인구조의 마련과 정책적 신호 측면에서 그 취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 구체적인 효과를 보면, 26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이자면제 제도에 의하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30이하(6구간, 월 소득인정액 844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 대하여 이자감면효과가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개정안에 의하면 지방소재 대학 학생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200이하(7~8구간, 7구간 974만원 이하, 1,299만원 이하)인 경우도 이자를 면제 받게 됨.
- 현재 이자면제 대상의 추세를 보면 학생들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현행법을 보면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이자를 면제하는 등 정책적 목적에 따라 그 대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취지에서도 개정안은 그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짐.

- 특히, 전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하면, 8구간 이하에 속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방대학 학생 수의 비중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전체 학생(수도권+비수도권)수의 55%이상이므로 대출잔액도 수도권 학생들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수요가 수도권에 비하여 많아 이자 면제 지원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에 의할 때 지방대학 학생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개인의 소득 등이 기준이 아니라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면제하는 경우 형평성 우려가 제기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자면제제도는 저소득층일수록 대출 의존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상환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인 만큼,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비율, 즉 월 소득 인정액(4인 가구 기준)¹⁾이 1,299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 이자를 면제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 재정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1) 월소득인정액=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 재산(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등)의 소득 환산액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고민정)

고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조정훈 위원 : 실효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법안이며, 예산 소요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도 아니므로, 오히려 지방대학 학생들에게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지방대학 학생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함.

고민정 위원 : 동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며, 수도권 학생들에 비하여 인프라, 교통 등 불이익을 받는 지방대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학자금 부담을 완화를 해주자는 취지임.

서지영 위원 : 시혜적인 정책을 통해 소액의 금액을 줄 것이 아니라, 교육부는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지방대학의 교육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김문수 위원 : 학비 등 혜택을 차츰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현실

적으로 필요성이 더 큰 지방대학 학생들에게 먼저 시행할 필요가 있음.

김민전 위원 : 지방대학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었음에도, 결국 취업은 수도권에서 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좀 더 고려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 보임.

김준환 위원 : 인당 지원받는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있는 돈이 될 수가 있음.

백승아 위원 : 동 개정안은 지방대학 학생들에게 8만원을 주는 법안이 아니고,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를 하기 위한 법안이며 그 효과가 연간 8만원이라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당장 시행하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임.

7. 심사결과

수정가결

[붙임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수정안 본문, 수정안조문대비표)

[붙임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교육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시행예정인 조문(제16조의2제6호)과 문구를 통일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제도 시행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6조의2제2항 제6호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안 제16조의2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중전의 제6호) 중 “대학생이 속한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200 이하에 속하는 가구의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대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2015년 이전에 대출받은 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다.

안 부칙 제1조 중 “2026년 7월 1일부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한다.

안 부칙 제2조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① 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해당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①(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①(현행과 같음)
1.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②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② ----- ----- ----- -----	② ----- ----- ----- -----

시점부터 고등교육	-----	-----
기관을 졸업하기	-----	-----
전까지의 기간과	-----	-----
대통령령으로 정하	-----	-----
는 연간소득금액(이	-----	-----
하 “연간소득금액”	-----	-----
이라 한다)이 상환	-----	-----
기준소득을 초과하	-----	-----
기 전까지의 기간	-----	-----
에 발생하는 학자	-----	-----
금대출 이자를 면	-----	-----
제한다.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	1. ~ 5. (현행과 같
	음)	음)
6. 「국민기초생활	6. -----	-----
보장법」 제2조제	-----	-----
11호에 따른 기준	-----	-----
중위소득의 100분	-----	-----
의 130 이하의 범	-----	-----
위에서 교육부장	-----	-----
관이 정하는 가구	-----	-----
소득인정액(학자	-----	-----
금 지원을 위하여	-----	-----
대통령령으로 정	-----	-----
하는 대학생 가구	-----	-----
의 소득인정액을	-----	-----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대출시점이 2015년 이전인 채무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신 설>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권이 아닌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제3조제2호가목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및 제3조제2호나목 중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제외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권이 아닌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제3조제2호가목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및 제3조제2호나목 중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제외

	한다) <u>대학생이</u> <u>속한</u> <u>가구의</u> <u>「국 민 기 초 생 활</u> <u>보 장 법」 제2조</u> <u>제9호에 따른 소</u> <u>득인정액이 같은</u> <u>법 제2조제11호</u> <u>에 따른 기준 중</u> <u>위소득 100분의</u> <u>200 이하에 속하</u> <u>는 가구의 사람</u> <u>으로서 교육부장</u> <u>관이 정하여 고</u> <u>시하는 사람</u>	한다) <u>대학생으로</u> <u>「국 민 기 초 생 활</u> <u>보 장 법」 제2조</u> <u>제11호에 따른</u> <u>기준 중위소득의</u> <u>100분의 200 이</u> <u>하의 범위에서</u> <u>교육부장관이 정</u> <u>하는 가구 소득</u> <u>인정액에 해당하</u> <u>는 사람. 다만, 2</u> <u>015년 이전에 대</u> <u>출받은 자는 「국</u> <u>민기초생활 보장</u> <u>법」 제2조제11</u> <u>호에 따른 기준</u> <u>중위소득의 100</u> <u>분의 200 이하에</u> <u>준하는 사람으로</u> <u>서 교육부장관이</u> <u>고시하는 사람</u>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 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 은 <u>2026년 7월 1</u>	③ · ④ (현행과 같 음) 부 칙 제1조(시행일) ----- --<u>공포 후 6개월</u>

	<u>일부</u> <u>터</u> 시행한다. 제2조(이자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 <u>제6호</u>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u>이 경과한 날부</u> <u>터</u>-----. 제2조(이자 면제에 관한 적용례) ----- -----<u>제7호</u> 의----- ----- ----- -----.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079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 제6호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제3조제2호가목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및 제3조제2호나목 중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대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2015년 이전에 대출받은 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079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① (생략) ②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시점부터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하 “연간소득금액”이라 한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1. ~ 5. (생략)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	법률 제21079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 ----- ----- ----- -----

정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대출시점이 2015년 이전인 채무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3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신 설>

-----말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제3조제2호가목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및 제3조제2호나목 중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대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가구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2015년 이전에 대출받은 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0 이하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교

③ · ④ (생 략)	<u>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u> ③ · ④ (현행과 같음)
-------------	--